

『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소관 부서의 명칭 등 행정 조직 체계를 현행화하고,
- 선산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,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공공질서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분관 설치에 따른 명칭과 위치 반영(안 제2조제2호)
 - 선산노인종합복지관 :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117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의거 소관부서의 명칭을 현행화 하고 선산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선산노인종합복지관 준공 및 관리이관에 따라 시설의 명칭 및 위치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- 노인인구 증가추세에 대비한 선산권역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어르신들의 노인복지시설 접근성 및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, 보다 나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